#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

## 취득·변호사법위반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4. 9. 2009고합348,2009고합373(병합)]



##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3인

【검 사】 안동완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오창민외 4인

#### 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 1(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1),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,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- 2. 다만, 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2로부터 35,000,000원을, 피고인 3으로부터 88,000,000원을, 피고인 4로부터 65,00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### 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